의 안 번 호

1750

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2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28.(금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0.(목)

2. 제안이유

O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이 물품 등 구매할 경우 관내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적용대상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라. 구매촉진(안 제5조)
- 마. 정보 제공(안 제6조)
- 바. 우선구매(안 제7조) 및 포상(안 제8조)

4. 근거법규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중구 공공기관 등이 물품 등을 구매함에 지역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
- 지역상품과 연결한 구매촉진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-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-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 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 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-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-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